

21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시세 감면  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4 월 21 일

여 수 시 장 권한대행 부 시 장  

여수시 조례 제1733호

붙임 여수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.

여수시 조례 제1733호

##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2022 년 6월 30일까지”를 “2024년 12월 31까지”로 한다.

제10조 제1항 중 “150원”을 “5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00원”을 “1,000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



란 300원을 말한다.

③ (생략)

-1,000원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